

「고흥군의회의 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고흥군의회의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6년 8월 10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고흥군 행정기구 일부 개편으로 인한 소관 부서 조정

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(안 제3조제2항제2호·제3호)

2. 행정자치위원회

기획실, 종합민원실, 인구정책실, 주민복지과, 행정과, 재무과, 여성가족과, 문화체육과, 경제산업과, 환경정책과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……

⇒ 기획실, 종합민원실, 인구정책실, 홍보소통과, 사회복지과, 가족행복과, 행정과, 재무과, 인재육성과, 문화체육과, 경제산업과, 환경정책과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……………

3. 산업건설위원회

관광정책실, 우주항공추진단, 신재생에너지과, 농업정책과, 축산정책과, 수산정책과, 해양개발과, 산림정원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스마트팜사업소……

⇒ 관광정책실, 우주항공전략실, 신재생에너지과, 농업정책과, 축산정책과, 수산정책과, 해양개발과, 산림정원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스마트팜사업소……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6. 8. 10. ~ 8. 14.(5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: 061-830-5032, 팩스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주민복지과”를 “홍보소통과, 사회복지과, 가족행복과”로, “여성가족과”를 “인재육성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우주항공추진단”을 “우주항공전략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	②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행정자치위원회	2. -----
기획실, 종합민원실, 인구정책실, <u>주민복지과</u> , 행정과, 재무과, <u>여성가족과</u> , 문화체육과, 경제산업과, 환경정책과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	----- <u>홍보소통과, 사회복지과, 가족행복과,</u> ----- <u>인재육성과</u> -----
3. 산업건설위원회	3. -----
관광정책실, <u>우주항공추진단</u> , 신재생에너지과, 농업정책과, 축산정책과, 수산정책과, 해양개발과, 산림정원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스마트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	----- <u>우주항공전략실</u> -----

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